

주요사업 처리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년 상반기 공시 기준

사회가치연대기금 정관에 기재된 주요추진 사업의 표시 및 처리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출연 및 기부재산의 표시·처리유형

재단은 금융권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순자산으로 처리하되, 이중 정관에서 정한 기본재산이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 등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은 기본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단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은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밖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회비 등의 기부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투·융자,보증 · 자금공급 지원사업의 표시·처리유형

사업 분야	사업명
사회적경제조직 자금공급 사업	① 공동 펀드상품 투자 참여 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동상품 지원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지원	① 고임팩트 사회적목적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극대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생태계구축	① PEF 운영사 운영자금 지원 ② SIB운영기관 운영자금 지원 ③ 중개기관 운영자금 지원

투자자산은 1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 획득 및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금융상품, 유가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만기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자산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재단의 대여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 사회적경제조직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 협동조합, 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대여금으로 계약에 의한 회수기한에 따라 장/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위의 투·융자, 보증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보증료수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익으로 분류한다.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이 공익 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재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사업외수익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표시하고, 인내자본 공급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인내자본의 유형(후순위채 등)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나 사업비용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다. 그 외 추진사업 표시·처리유형

투·융자, 보증 등 자금공급 지원사업 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밖의 고유목적사업(정책, 학술, 연구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교육,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추진 등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수행비용으로 구분하고 다시 사업종류별·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1.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2.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 투·융자, 보증 등의 지원
3. 사회적 경제 지원 중개기관 육성, 지원 및 중개기관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출연, 투·융자, 보증 등의 지원
4.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학술, 금융상품 및 사업 연구 개발, 홍보 및 네트워킹
5.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 전문가 자문 제공 등 각종 사업 기획 및 운영
6. 포럼, 학술대회, 강연, 교육 등 국내외 행사 주관 및 지원
7.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설 등 업무 공간 무상 제공
8.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사회투자 관련 국내외 생태계 구축 사업
9.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